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센텀 파크 SK VIEW)

1. 공급 내역

-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4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지상 29층, 총 3개동 30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공급 면적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세부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주택	074.9880	74	74.9898	22.6546	97.6444	46.0563	143.7007	114
	084.9546A	84A	84.7330	25.1915	109.9245	52.0403	161.9648	110
	084.9609B	84B	84.9241	25.0385	109.9626	52.1582	162.1208	85
	공급 세대 합계							309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구분		074.9898		084.7330A		084.9241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	부산광역시	2	10	2	10	1	5	5	25
국가유공자		2	10	1	5	1	5	4	20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2	10	1	5	1	5	4	20
중소기업근로자		6	30	6	30	6	30	18	90
합계		12	60	10	50	9	45	31	155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입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24년 10월 11일(금)	주요 일간지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견본주택 개관(예정)일	2024년 10월 11일(금)	홈페이지 운영 계획 공지
특별공급 신청(예정)일	2024년 10월 21일(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2024년 10월 30일(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신청 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table border="1"> <tr> <td>추천 대상자</td> <td>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td> </tr> <tr> <td>예비 대상자</td> <td>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td> </tr> </table>	추천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안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추천대상자</th> <th>입주자저축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장애인</td> <td>필요없음</td> </tr> <tr> <td>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td> <td>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td> </tr> </tbody> </table>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단,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합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2018.12.11.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이상의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특별공급에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45 853 1469 1070">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공급신청하려는 지역에 따라 상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제외 및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예정)]에 당사 홈페이지에서(https://cp-sk.co.kr)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III. 당첨자 선정 방법 및 기타 유의 사항

1)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① 만 65세 이상인 분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③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분
 - ※ 위 ①~③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신청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한해 부부의 경우 예외)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년 10월 11일(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자료

■ 위치도

LOCATION

수영강 조망권부터
센텀시티 생활권까지 완벽하게

Traffic

반영동, 원동IC를 통한 고속도로로 진입과
경안대교 진입 용이로 부산 어디든 **빠른 교통환경**

Edu

비교적 쾌적한 조망이 보시, 센텀시티의
편익이 가장 인접해 있는 **안심 교육환경**

Infra

비교적 최신 트래픽, 인근 코스트코 부산점,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센텀시티 생활권**

Nature

수영강 산책로, 수영회경공원, 온천천 시민공원 등
한 걸음에 만나는 다양한 **힐링&그린 인프라**

Vision

센텀 트윈 웨이브시티(예정), 민원·센텀 도시고속도로(예정),
해운대구청 신정사(예정), 수영강 휴먼브릿지(예정),
센텀2지구 도시첨단주택단지(예정),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사) (입계) 등의 **대규모 미래비전 수혜**

※ 위 광역입지도에 표현된 현황, 개발 계획, 예정사항 등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해당관청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지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51-866-9800
- 홈페이지 : <https://cp-sk.co.kr>